

|           |                    |      |
|-----------|--------------------|------|
| 의안번호      | 제 호                | 의결사항 |
| 의결<br>연월일 | 2023. . .<br>(제 회) |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                 |
|--------|-----------------|
| 제 출 자  | 국무위원<br>(법무부장관) |
| 제출 연월일 | 2023. . .       |

법제처 심사 전

## 1. 의결주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및 수사준칙 등 시행 이후 일부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거부, 수사기관 사이의 이른바 ‘뽕퐁식 사건 떠넘기기’ 등으로 수사지연과 부실수사가 만연해지고, 그로 인해 국민이 억울한 피해를 보고도 신속하게 구제를 받지 못하는 부작용과 폐해가 발생함.

이에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사건으로 접수하도록 명시하는 등 수사 절차를 국민 피해구제 중심으로 보완하는 한편, 경찰은 경찰 수사단계를 책임지고 검찰은 검찰 수사단계를 책임지면서도 상호 협력을 강화하도록 검·경 책임수사시스템을 정비하고, 관계 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체계정합성을 제고함.

## 3. 주요내용

가. 국민 피해구제 검·경 책임수사시스템 정비

1) 수사기관의 고소·고발장 접수 의무 명시(안 제16조의2제1항 신설)

일부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그릇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접

수하도록 의무화.

2) 사건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수사를 위한 각종 수사기한 정비(안 제16조의2제2항, 제18조제4항, 제60조제3항, 제63조제4항 신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한(3개월),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시한(1개월), 사법경찰관의 보완수사요구 및 재수사요청 이행시한(각 3개월), 검사 수사개시 범위 내 범죄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이송기한(1개월) 원칙을 명시.

3) 검·경의 보완수사 분담 및 그 기준 정비(안 제59조제1항 개정, 제2항 신설)

사법경찰관을 통한 보완수사를 일률적인 원칙으로 하여 경찰의 업무과중과 수사지연 등을 초래한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구체적 사건의 특성에 따라 검·경이 보완수사를 분담하도록 일반적 기준 마련.

4) 재수사 사건의 처리절차 개선(안 제64조제2항 개정, 제3항, 제4항 신설)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검사가 송치요구 여부를 실질적으로 검토하도록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명문의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가 범죄 혐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을 경찰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

도록 일부 보완.

5) 검·경 협력 활성화(안 제7조, 제8조)

중요사건에 대한 송치 전 협의를 강화하고, 검·경 일방이 요청한 사건이나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에 대해서는 검·경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 상호협력 활성화 방안 마련.

나. 관계 법령과의 체계정합성 제고 등

1) 영장 사본 교부 관련 절차규정 마련(안 제32조의2 신설, 안 제37조, 제38조)

2022. 2. 3.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영장 사본을 교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같은 법 제85조, 제118조), 구체적인 교부 절차를 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주의의무를 명시함.

2) 법원에 대한 피의자 석방사유 등 통지 관련 규정 보완(안 제36조)

「형사소송법」은 영장으로 체포되거나 긴급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 검사가 지체없이 법원에 석방사유 등을 서면 통지하도록 규정하고(같은 법 제200조의4, 제204조), 현행 수사준칙에는 검사가 법원에 대한 통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석방 일시 등을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일부 마련되어 있으나(제27조, 제36조), 사법경찰관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사가 기각하여 체포된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일부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3)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의 승인요청 시한 정비(안 제27조제1항)

현행 수사준칙은 영해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경우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을 통상의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연장하고 있으나, 「해양경비법」에 따른 경비수역은 대한민국의 법령과 국제법에 따라 대한민국의 권리가 미치는 수역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찰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고 있음에도 영해 밖의 경비수역에 대하여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시한이 12시간으로 제한되어 영해와 같이 24시간으로 통일함.

4) 검·경간 이송 대상 보완(안 제51조제3항제2호)

현행 수사준칙은 재판 계속 중 사건과 포괄일죄인 사건을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불송치결정하는 대신 검사에게 이송하도록 하여 처벌의 누락을 방지하고 있으나, 포괄일죄의 경우와 동일한 구조인 상상적 경합은 이송 대상에서 누락되어 이를 보완함.

5) 사범방해 우려 피의자에 대한 이송 통지 절차 보완(안 제53조제1항)

현행 수사준칙은 사건을 이송하는 경우 예외 없이 피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데, 사건이 수리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피의자에게까지 일률적으로 통지를 강제하면 사건관계인에 대한 위해나 증거인멸·도주와 같은 사범방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의자를 상대로 아직 주요한 인적·물적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다만, 관할 부재에 따른 검찰청 간 이송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제256조에 따라 피의자 통지가 강제되므로 제외).

6) 「검찰청법」의 수사개시 범위 조항과 모순된 이송 강제 규정 삭제  
(안 제18조제1항)

현행 수사준칙은 검사가 적법하게 수사를 개시한 사건도 수사 중에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밖으로 판단되면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하도록 하나, 이는 수사개시 단계의 범위만 제한한 「검찰청법」과 모순되고 별도의 법률상 근거도 없으므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한 사건은 책임지고 수사를 마무리하도록 함.

####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1.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2. 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3.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구성·가입·활동 등과 관련한 사건
4.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 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시·교환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8. 「염연초생산협동조합법」 제42조제5항
9.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7조제3항
10. 「새마을금고법」 제85조제6항
11. 「교육공무원법」 제62조제5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를 “제1항에 따른”으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을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27조제1항 단서 중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포한 경우
-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의 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④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알고”를 “알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를 “즉시”로 한다.

제37조 중 “한다”를 “하며, 수사기밀 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 제목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를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교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피압수자에게”를 “처분을 받는 자에게”로, “피압수자가”를 “처분을 받는 자가”로 한다.

제3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제38조제2항 중 “한다”를 “하고, 그 중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 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할 때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51조제3항제2호 중 “관계에”를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에”로 한다.

제53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제53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5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 제59조제1항 중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을 “사법경찰관”으로,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로,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59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

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하여 해당 피의자 및 피의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64조제2항 본문 중 “대해서”를 “대하여”로, “요청을 하거나”를 “요청하거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64조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 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 ③ 검사는 전항 단서의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전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단서의 송치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u>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이나 내란, 외환, 선거,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 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 사건 등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거나 국가적 · 사회적 피해가 큰 중요한 사건(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u></p> | <p>제7조(중요사건 협력절차) ① <u>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이하 “중요사건”이라 한다)에는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 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 · 교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의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u></li> <li>2. <u>내란, 외환, 대공(對共), 선거(정당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를 포함한다), 노동, 집단행동, 테러, 대형참사, 연쇄살인 관련 사건</u></li> <li>3. <u>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의 조직 · 구성 · 가입 · 활동 등과 관련한 사건</u></li> <li>4. <u>주한 미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 외국인군무원 및 그 가족이나 초청계약자의 범죄 관련</u></li> </ol> |

<신 설>

사건

5. 그 밖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  
하거나 국가적·사회적 피해  
가 큰 중요한 사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소시  
효가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등에 관하  
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해야  
한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개시  
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시  
·교환해야 한다.

1. 「공직선거법」 제268조

2.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  
한 법률」 제71조

3. 「농업협동조합법」 제172조  
제4항

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78  
조제5항

5. 「산림조합법」 제132조제4  
항

6.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86조제4항

7. 「염업조합법」 제59조제4항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

<삭 제>

우

3. 법 제197조의3제4항 및 제5

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

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삭 제>

4.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

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

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

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

해 이견이 있는 경우

<삭 제>

5. 법 제222조에 따라 변사자 검

시를 하는 경우에 수사의 착

수 여부나 수사할 사항 등에

대해 이견의 조정이나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삭 제>

6.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삭 제>

7. 법 제316조제1항에 따라 사

법경찰관이 조사자로서 공판

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

하게 된 경우

<삭 제>

②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또

는 제6호의 경우 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의에도 불구하

② 제1항에 따른 -----

-----

-----

고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의 장과 해당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지방해양경찰관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의 협의에 따른다.

<신 설>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  
-----  
-----.

1. 중요사건에 관하여 상호 의견을 제시·교환하는 것에 대해 이견이 있거나, 제시·교환한 의견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2. 「형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3. 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지 여부나 사법경찰관이 계속 수사할 수 있는 경우 수사를 계속할 주체 또는 사건의 이송 여부 등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4. 법 제245조의8제2항에 따른 재수사의 결과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경우

<신 설>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건을 검  
찰청 외의 수사기관에 이송해야  
한다.

1.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1  
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  
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때

2.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  
위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  
의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 수  
사 중 범죄 혐의 사실이 「검  
찰청법」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범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판단되는 때. 다만 구속영  
장이나 사람의 신체, 주거, 관

제16조의2(고소·고발 사건의 수  
리 등)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  
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에는 이를 수리해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고  
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  
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수사를 마쳐야 한다.

제18조(검사의 사건 이송 등) ①  
---- 「검찰청법」 제4조제1항  
제1호 각 목에 해당되지 않는  
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진정  
등이 접수된 -----.

<삭 제>

<삭 제>

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③ (생략)

<신설>

제27조(긴급체포) ①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 후 12시간 내에 검사에게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제4호가목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사중지 결정 또는 기소중지 결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이나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나목의 바다에서 긴급체포한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24시간 이내에 긴급체포의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른 이송을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제27조(긴급체포) ① -----  
-----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신 설>

② ~ ④ (생 략)

<신 설>

1. 제51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  
른 피의자중지 또는 제52조제  
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  
정이 된 피의자를 소속 경찰  
관서가 위치하는 특별시·광  
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 긴  
급체포한 경우

2. 「해양경비법」 제2조제2호  
에 따른 경비수역에서 긴급체  
포한 경우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체포·구속영장 사본  
의 교부) ① 검사 또는 사법경  
찰관은 영장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하는 경우에는  
법 제200조의6 또는 제209조에  
서 준용하는 법 제85조제1항 또  
는 제4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반  
드시 영장을 제시하고 그 사본  
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  
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  
할 때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                                                                                                                                                                  |                                                                                                                                                                                                                                                                                                                                                                                                                                                             |
|------------------------------------------------------------------------------------------------------------------------------------------------------------------|-------------------------------------------------------------------------------------------------------------------------------------------------------------------------------------------------------------------------------------------------------------------------------------------------------------------------------------------------------------------------------------------------------------------------------------------------------------|
| <p>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00조의2제5항 또는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하지 <u>않고</u> 체포 또는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적은 피의자 석방서를 작성해야 한다.</p> | <p><u>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u></p> <p>③ <u>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u></p> <p>④ <u>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u></p> <p>제36조(피의자의 석방) ① -----<br/>-----<br/>-----<br/>-----<br/>----- <u>않고(사법경찰관이 구속영장의 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검사가 그 신청을 기각한 경우를 포함한다)</u> -----<br/>-----<br/>-----</p> |
|------------------------------------------------------------------------------------------------------------------------------------------------------------------|-------------------------------------------------------------------------------------------------------------------------------------------------------------------------------------------------------------------------------------------------------------------------------------------------------------------------------------------------------------------------------------------------------------------------------------------------------------|

1. · 2. (생략)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석방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생략)

2.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석방한 때: 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검사에게 석방 사실을 보고하고, 그 보고서 사본을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을 청구하거나 신청할 때에는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범위를 범죄 혐의의 소명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정해야 하고,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및 압수할 물건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한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  
-----  
-----.

1. (현행과 같음)

2. -----  
-- 즉시 -----  
-----  
-----.

제37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청구·신청) -----  
-----  
-----  
-----  
-----  
-----  
-----  
-----  
----- 하며, 수사기밀 또는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의 소명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 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에 따라 영장을 제시할 때에는 피압수자에게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 또는 검증이라는 사실과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및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신체·물건, 압수할 물건 등을 명확히 알리고, 피압수자가 해당 영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처분을 받는 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신 설>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8조(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제시·교부) ① -----  
-----  
-----  
----- 처분을 받는 자에게 -----  
-----  
-----  
-----  
---- 처분을 받는 자가 ----  
-----.  
다만, 처분을 받는 자가 피의자인 경우에는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② -----  
-----  
-----  
----- 하고, 그 중 피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해당 영장의 사본을 교부해야 한다.

③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전 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거나 영장의 사본을 교부

<신 설>

<신 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  
② (생 략)  
③ 사법경찰관은 제1항제3호나  
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건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을  
검사에게 이송한다.

할 때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  
의 개인정보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  
록 유의해야 한다.

④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제1  
항 및 제2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영장의 사본을 교부한 경우에는  
피의자로부터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를 받아 사건기록에 편철  
한다.

⑤ 피의자가 영장의 사본을 수  
령하기를 거부하거나 영장 사본  
교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는 경우에  
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영  
장 사본 교부 확인서 끝부분에  
그 사유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

제51조(사법경찰관의 결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1. (생략)

2. 기소되어 사실심 계속 중인 사건과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

④ · ⑤ (생략)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51조  
또는 제52조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소인·고  
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  
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  
매를 포함한다. 이하 “고소인  
등”이라 한다)과 피의자에게 통  
지해야 한다. 다만, 제51조제1항  
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신 설>

### 1. (현행과 같음)

2. -----  
-----  
관계에 있거나 「형법」 제40  
조에 따른 상상적 경합 관계  
에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53조(수사 결과의 통지) ① --  
-----  
-----  
-----  
-----  
-----  
-----  
-----  
-----  
-----  
-----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소인등에게만 통지한다.

1. 제51조 제1항 제4호가목에  
따른 피의자중지 결정 또는  
제5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기  
소중지 결정을 한 경우

2. 제51조제1항제5호 또는 제52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 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송 결정을 한 경우(「형사소송법」 제256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해당 피의자에 대하여 출석요구 또는 제1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던 경우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 사법경찰관-----  
-----  
----- 경우 직접 보완수사하거나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97조의2제1항제1호 전단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히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사건을 수리한 날(이미 보완

<신 설>

수사요구가 있었던 사건의 경우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2. 사건이 송치된 이후 검사에 의하여 해당 피의자 및 피의 사실에 대해 상당한 정도의 보완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3. 법 제197조의3제5항, 제197조의4제1항, 제198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경우

4.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사건 송치 전에 수사할 사항, 증거수집의 대상, 법령의 적용 등에 관하여 협의를 마치고 송치한 경우

② 검사는 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필요한 보완수사의 정도, 수사 진행 기간, 구체적 사건의 성격에 따른 수사 주체의 적합성,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존중과 협력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                                                                                                                                                                                               |
|--------------------------------------------------------------------------------------------------------------------------------------------------------------------------------------------------|-----------------------------------------------------------------------------------------------------------------------------------------------------------------------------------------------|
| <p><u>②</u> · <u>③</u> (생략)</p> <p>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 ② (생략)</p> <p><u>&lt;신설&gt;</u></p>                                                                                                  | <p><u>③</u> · <u>④</u>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p> <p>제60조(보완수사요구의 방법과 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p> <p><u>③ 사법경찰관은 법 제197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완수사요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완수사를 마쳐야 한다.</u></p>                      |
| <p><u>③</u> · <u>④</u> (생략)</p> <p>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 ③ (생략)</p> <p><u>&lt;신설&gt;</u></p>                                                                                                     | <p><u>④</u> · <u>⑤</u>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제63조(재수사요청의 절차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사법경찰관은 법 제245조의8 제1항에 따른 재수사의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수사를 마쳐야 한다.</u></p>                         |
| <p>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생략)</p> <p>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제1항 제2호에 따라 재수사 결과를 통보한 사건에 <u>대해서</u> 다시 재수사를 <u>요청을 하거나</u> 송치 요구를 할 수 없다. <u>다만, 사법경찰관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리에 위반되거나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결</u></p> | <p>제64조(재수사 결과의 처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 -----<br/>-----<br/>----- <u>대하여</u> -----<br/>---- <u>요청하거나</u> -----<br/>----- . <u>다만,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아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 수</u></p> |

과만으로도 공소제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명백히 채증법칙에 위반되거나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사할 필요가 있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법 제197조의3에 따라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관련 법령 또는 법리에 위반된 경우
2. 범죄 혐의의 유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재수사요청한 사항에 관하여 그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다만, 불송치결정의 유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송부받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과 재수사 결과만으로도 범죄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4. 공소시효 또는 형사소추의 요건을 판단하는 데 오류가 있는 경우

<신 설>

<신 설>

③ 검사는 전항 단서의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이에 협력해야 한다.

④ 검사는 재수사 결과를 통보 받은 날(전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송부를 요청한 경우 이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단서의 송치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송치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송부받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